

2016. 12

- 충청남도교육청 스쿨넷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I. 총 평	1
II. 주요 논의내용	2
① 주제발표(1명)	2
② 지정토론(4명)	5
③ 자유토론(4명)	10
④ 청중토론(2명)	12
III. 토론회 결론 및 성과	14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14
[부 록]	
□ 토론회 사진	15
□ 언론보도 현황	16

- 충청남도교육청 스쿨넷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청남도교육청 스쿨넷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주요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때 · 곳 : '16. 12. 19. (목), 14:00~16:30 / 예산교육지원청 시청각실
- 참 석 : 5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충청남도교육청 스쿨넷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I 총 평

- 충청남도교육청의 3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로
 -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 의혹 및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스쿨넷 사업은 교육청 산하기관과 학교의 기존 인터넷망, 통신보안 장비를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큰 만큼 사업자 선정 문제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특히, 사업자 선정과정이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제언으로 총체적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스쿨넷 선정과정 관련 정책 변화의 필요성 대두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부서)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II

주요 논의내용(요약)

1 주제발표

< 강진원 TJB보도국 취재팀 부장 >

○ 충남교육청 스쿨넷의 시작과 진행,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요(현황) 설명

i) 스쿨넷 추진경과

- 2005년 10월~ 정통부, 교육부 NIS(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선정
- 2006년 1월~ 1단계 NIS 제공 개시
- 2010년 10월~ 2단계 NIS 사업자 선정, 스쿨넷 변경
- 2011년 3월 이후~ 스쿨넷 서비스 제공 中
- 2015년 7월~ 정부, 3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스쿨넷(School-net) 서비스란

학교 및 교육청 등에 제공하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사업의 한 부분으로 교육관련 기관들이 지역차별 없이 저비용, 고품질의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환경을 마련한 것

ii) 스쿨넷 추진개요

- 서비스 시작 : 2016년 9월 1일부터 목표
- 운영형태 : 집선형태 - 시·군별 집선 -> 전체 집선
- 사용료 : 185억 원(5년간 매월 3억 원)

iii) 스쿨넷 추진과정

- 2015년 9월~ 충남교육청 T/F팀 구성
- 2016년 3월 31일~ 4월 6일: 사업제안요청(RFP)규격 공개
- 2016년 4월 27일: 사업제안서(RFP) 접수(통신3사)
- 2016년 4월29일 제안서 평가(평가단 80명중 7인)

- 2016년 5월 2일 스쿨넷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1위 LG U+, 2위 KT, 3위 SK B)
- 2016년 6월 13일 충남교육청과 LG U+ 협약체결
(※ 협약기간 : 2016. 9.1~2021. 8. 31)
- 2016년 6월 29 김지철 교육감은 수사와 감사의뢰
- 2016년 8월 16일~ 8월19일 스쿨넷 합동감사
(사상 최초의 합동감사: 감사반원 10명, 도민감사관과 대전,충남·북,경기도교육청 감사반)
- 2016년 9월 계약된 9.1자 未개통, 2단계 형태유지
- 2016년 12월 장비 조건부 검수, 개통이 가능한지?

iv) 사건의 배경(결정적 배경)

- 도교육청 담당자와 LG U+의 유착 의혹
 - 도교육청 담당자가 통신사에 잘못 보낸 문자내용으로 봐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의혹(김종문 의원 주장)
 - 업체관계자와 강원도교육청 원정 평가 시 동승 출장
 - 강원도교육청과 충남교육청 모두 LG U+ 사업자 선정됨
 - 제안서 공고 법적 기간 무시(40일- > 20일)
 - 탈락업체 “재심사”요구 vs 도교육청 “문제없다”

v) 스쿨넷 감사와 수사결과

- 행정절차 위법
 - 제안서 제출 기간 임의 적용
 - 제안서 원본접수 불분명(사본인지 원본인지 구분 안됨)
 - 제안요청서 작성근거 미흡 등
- 공무원 일탈
 - 필수 장비를 선택 장비로 REF 변경해 부적합 제품 제안토록 함
 - 업무배제 이후 선정 업무 관여 등

- 통신업체 위법
 - 업체가 제출한 보안장비 2종과 네트워크 장비 4종의 보안인증서가 허위 또는 진위여부 확인 불가능
- 경찰 수사결과(8명 검찰에 송치 대전지검 10.28)
 - 교육청 A씨 입찰방해(LG U+에 입찰서류 유리하게 조점, 평가단 명단 누설)
 - LG U+ 측 3명 뇌물 공여 등(A씨에게 향응, 평가위원 3명에게 높은 평점 청탁)
 - 평가위원 3명 공무집행 방해 등(LG U+ 청탁 받고 최고점수 부여 등)
 - 교육감 캠프 출신 B씨 금품요구(교육감과의 친분 과시하며 통신사 측 만나 금품 요구)

vi) 3단계 스쿨넷 개통했나?

- 12월 현재 장비 未검수 상태, 당초 협약에는 9월1일 완료지만 법적 未개통 상태(장비평가단, 조건부 통과/제품 기준 추후 보완)
- LG U+ 의 미 이행과 충남교육청의 관리 부실
 - 사업지연배상금 3억 8천만원 부과(도의회 문제 제기 후 부과)
 - 팀장, 담당자 인사 조치는 사안의 무게에 걸맞은 인사인가에 대한 논란

vii) 스쿨넷 계약의 유효 논란

- 교육계 일부 업계 계약 즉각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
- 제안서 조작, 부적합 제품 제안서 제출, 심사위원에 청탁 높은 점수 부여 등은 해지사유
- 충남교육청 입장은 해지 사유는 아니다
- 변호사 자문결과 위법 있지만 해지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다는 의견
(※ 검찰 기소 혹은 1심 판결단계에서 2차 법리검토)

○ 충남교육청은 특정업체 위한 봐주기로 REF 특혜, 청탁, 점수조작, 공정성 훼손등과 보안에 대한 인식결여, 개인일탈로 규정할 사안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충남교육청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② 지정보론 (4인)

① 최인희 전산팀장(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네트워크 통신망 통신요금 절감을 위하여 각 학교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관리의 효율화, 보안강화,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교육정보원) 집선을 통한 단일사업자를 선정 하였음.
- 사업자 선정 절차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로부터 3개 통신사가 선정되어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2016년 6월13일 LG U+와 협약체결, 협약내용을 보면
- 한국정보화진흥원과 3개 통신사와의 협약 특수조건으로 통신서비스 제공 기간은 60개월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로 2016.9.1.~2021. 8.31.까지로 2단계 사업자(KT, SKB)와 서비스 해지함.
- 이용요금은 LG U+와 한국정보화진흥원간 체결한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 사업협약서'의 이용요금이며, 속도 및 회선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있게 기준을 정함.
- 2016년 9월1일자로 통신회선이 전환되었으나, 장비(네트워크 및 보안 등) 일부 설치가 미흡하고 완료보고서를 미제출하여 검사검수가 불가하여 지연배상금 요구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상태임.
- 스쿨넷 3단계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미비점 주요사항으로는
- 사전공개와 실제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하여 보안인증서 제품유형이 '통합보안관리'가 아닌 '통합로그관리'를 제안하여 기 운영시스템 및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연동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음
- ※ 통합보안관제시스템으로 교체하여 호환이 가능하도록 협상을 통해 해결.
- 제안서의 백신서버 및 보안인증서에 관한 사항이 업체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협약 해제 가능여부 법률적 검토

i) 첫 번째 백신서버 제안서 종합본에는 이전설치로, 요약본에는 신규 설치로 제안

※ 기 운용중인 서버는 이전설치하고 신규로 2대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최종합의

ii)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인증서 총 6종에 대하여 다른 제품의 CC 인증서를 첨부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항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충청남도교육청 법률전문가 및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 사업목적(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명확할 때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따라서 해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2016년 11월15일부터 8차례 걸쳐 검수과정을 거쳐 12월9일 검수 완료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없이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으로 타 통신사 장비 사용료 정산과 9월1일부터 최종 검사승인일까지의 지연배상금을 적용할 예정이며,

- 앞으로 스쿨넷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개선 방안 의견으로 첫 번째, 교육부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 장비 기준(임대장비, 사양, 금액 등)안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두 번째, 한국정보화진흥원 일괄 추진 또는 시도별 파견 또는 상주를 받아서(TF팀 구성) 운영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또 다른 대안으로는 조달청 입찰(평가 포함)을 통하여 계약하는 등 도 교육청에서 직접 계약하지 않는 정책변화가 필요함.

② 이상선 공동대표(충청남도시민사회단체)

○ 지역 시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주로 권력감시·행정감시 차원 그리고 비리, 부패문제 관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볼 것인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좋겠는가 하는 정도에서 논의하자면

- 기자의 관점에서는 발표한 자료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반해 최인희 팀장의 발표내용은 향후 사실관계에 있어 접근을 해 봐야겠다는 입장임.

- 왜냐면 교육청은 민원 노출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패쇄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짐
검찰, 법원 판단 등 사실관계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텐데 부정부패는 발생즉시 초기에 제압하고 제거를 해야지 그것이 방치되고 묵인 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로 더 많은 사람의 책임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예견이 들기 때문에 자체감사나 수사선상에서 문제가 들어났다면 적어도 업체와의 효력 중지라든가 해당 직원의 직무정지 정도는 내렸어야했지만 도 교육청이 온정주의, 조직적 이기주의에 함몰된 것 같아 안타까우며 앞으로 이 사안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책임회피, 책임공방으로 나간다면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됨.

③ 송호근 교수(한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 대학정보화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참여 경험을 토대로 스쿨넷을 바라보고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대학교육전산망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스쿨넷에 대한 발전 방안 제안
- 한국교육전산망(KREN)의 발자취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자면
 - KREN은 비영리단체로 국내대학,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고, 교육부-운영본부-지역주관대학 협의체로 운영
 - 전국 대학의 안정적 통신망 운영과 발전 도모, 저비용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 환경지원, 교육기관 상호간의 효율적인 정보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고, 지역협의체 및 커뮤니티를 통한 교육 협의체계 구축, 연구과제, 정보전문교육 및 부가서비스를 통해 신기술을 발굴한다는 운영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국고 예산삭감에 따른 자체사업자 지정 및 위탁운영채택, 단체협약을 통해 저비용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 제공, 강제성 없는 대학교육전산망 협의회 운영 및 개별협상권(15% 이내)을 인정

○ 대학교육 전산망 역사

- 1982년 국가 5대 기간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태동
- 1991년 교육기관 인터넷 백본망을 구축 운영
- 1991년 교육전산시범망 구축- 전담사업기관(서울대학교) 및 8개 지역센터
- 1995년 교육정보화 종합추진계획 수립(16개 교육청을 교육전산망에 연결)
- 1997년 초중고에 도메인 서비스 개시(가입기관 폭증)
- 2000년 대학을 중심으로 한 비용분담방안 마련
- 2001년 상용망에 위탁운영
- 2009년 복수사업자에서 다수사업자(2~4개)로 선정방식 변경
- 2016년 교육전산망 국고지원 중단

○ 3단계 스쿨넷 서비스는 학교 및 교육청 등에 제공하는 공공정보통신 서비스사업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선정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5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스쿨넷 발전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언을 드리면

-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특징으로 인프라 구축 투자의 고비용으로 유지 비용 저렴과 연속적 사업을 통해 이윤추구를 위한 점과
문제점 제기 영역부분으로 공정성(←부정청탁의 금지), 행정절차(←투명성 확보), 평가방법(←정량적/정성적 총체적 평가) 등이 확보되기 위한 점을 고려해서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 첫 번째 비영리 운영단체가 설립하게 되면 투명성, 제도적 보완이 될 것이며, 두 번째 단일사업자가 추천이 되고 있어서 기존사업자의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복수사업자 추천제 실시로 사업자의 최소 이윤보장이 되며, 세 번째 최종수요자(학교)의 입장을 반영하여 개별학교 협상권 및 운영주체권을 인정하고 네 번째 계약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과열경쟁 및 위기변화에 대하여 효과적일 것임.

- ◆ [좌장 김용필 의원] 충남교육청 스쿨넷 발제를 해주신 강진원 부장께서 스쿨넷 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④ 강진원 부장[TJB보도국]

○ 충남교육청의 스쿨넷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 자체감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업무담당자가 공고 기간부터 잘못 처리 되었다고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업무공간에서 근무를 한 경우
- 교육청에서는 8월에 지연배상금 요구 통지를 했지만, 그 전부터 김용필 의원께서 문제제기가 나온 후에 뒤늦게 대응을 한 것은 아닌지?
- 185억 원의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꼼꼼히 챙겼어야 함에도 전문적인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미인증 제품이 들어 왔는데, 사업기간 완료전에 CC인증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업체와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기 어려움
- 그리고 감사결과 업체와 직원과의 유착, 제공장비 보안인증서 미인증 제품, 평가 조작, 뇌물 수수 등 적발된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한 계약 해지 사유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것이 평가에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됨.
- 또한 복수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교육감께서는 주변 측근들에게 '누구 의혹 살만한 일을 한 사람 있냐고 확인을 한 후 없다면 전문가 및 담당자들에게 맡기고 관여하지 말라' 고 하였다는데 과연 행정행위 미숙한 것에 대한 기관장은 연대 책임이 없는지 의문스러우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교육청에서는 그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사항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함.

③ 자유토론 (4인)

- 송 교수님께서 주 운영관리를 비영리단체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 어떠한가에 대한 의견에는 교육청도 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있으며, 계약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계약 전부를 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한 부분은 같은 맥락의 의견이며, 그 다음 단일사업자 선정할 때 복수사업자 추천을 해서 기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저 또한 장비를 걷어내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이권 관련에서 기존사업자와 혼돈과 갈등이 있지 않을까는 염려도 있어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으며, 또 최종 사업의 수요자 입장에서 개별 학교 입장에서 반영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학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수렴과 속도 점검, 비품 점검 등을 통하여 학교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 계약기간이 5년은 너무 길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쿨넷 2단계 추진과정에서는 계약기간이 3년이었으나, 투자비용 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어서 5년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말씀드리고, 이 사안은 16개 시·도가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회 때 의견은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인희 팀장]

- “계약법에 의하면 입찰 시 위조·변조, 허위사실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해지 사유의 특별한 사유가 안되면 해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발제자인 강진원 부장이 발표한 뇌물수수, 평가조작 등 혐의 사실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해지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김용필 의원]

⇒ 경찰 수사결과와 뇌물수수 혐의가 나왔지만 담당자들은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명확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며,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보고 개인적으로 놀라웠

지만 협의결과 뇌물수수라든지 기타 명확한 증거가 없고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겠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처분이나 해지를 안하겠다는 입장은 아님.

[답변: 최인희 팀장]

-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제안요청서 규격서 작성 미흡, 처리 방안 미흡, 일상감사 보안심사 사전 미이행 등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나온 사안인데 경찰수사에서 담당자들이 부인했다는 것만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법률 자문을 구했다면 어느 기관이고 어느 변호사인지 ?

[좌장 : 김용필 의원]

⇒ 모든 사안(합동감사 및 수사결과)을 가지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교육청 법률전문가 및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결과 평가나 통신서비스 등 사업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명확할 때 귀책사유가 해당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해제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답변: 최인희 팀장]

- 회선전환 부분인데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최 팀장은 9월 1일 회선이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개통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서 L2 보안스위치는 사용료를 제공하면서까지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였는데 L2보안스위치는 중요하닌칸 이용한 것 같은데, 그러면 회선전환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어떤 통신사와의 개통이 중요한가요?

[TJB 강진원 부장]

⇒ 어떤 항목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없으며 모두 중요합니다. 그 장비를 빌려 사용했기 때문에 댓가를 지급할 계획임.

[답변: 최인희 팀장]

- 용어를 다시한번 설명하면 9월1일자 회선을 전환했다고 말하면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갈겁니다 다시 말하면 LG U+ 는 9월1일자 회선만 전환했을 뿐 개통을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을 한거죠 ?

[TJB 강진원 부장]

⇒ 네 맞습니다. 9월1일 통신회선만 전환되었을 뿐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연배상금 요구를 하였음.

[최인희 팀장]

- 지금 논의를 지켜보면 권한이 있는데 권한에 따른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책임을 지는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소된 3명에 대해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내릴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국한된 사람들과 연계가 되어진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충남교육청의 조직관리에 있어서 방어적 조직 집단이기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임.

[이상선 공동대표]

4 청중토론 (2인)

-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점과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송호근 교수의 개선 방안으로
 - 스쿨넷 사업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 길다보니 사업금액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계약기간 단축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민해봤으며
 - 아쉬운 부분은 충남교육청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 같아서 끝까지 들어본 결과 명확한 논리적 근거없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음.
- 강진원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증서를 허위를 제출했다는 것이 잘못된 맞으나 해지할 만한 막중한 문제의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면에서 깊이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지 엄밀히 해지사유를 따져보지 않고 해지행위를 했을 경우 소송에 말려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

⇒ 일반적으로 기소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해지 사유인 합동감사 결과 CC미인증 제품이 제안서 제출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재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룰 여지가 있지만,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상황에서 왜 해지를 못하는가? 라고 반문한다면 의혹 및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TJB 강진원 부장]

○ 최인희 팀장께 질문드리면 RFP를 발송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제안서를 내게 되는데 그 제안서에 조건표를 첨부하고 조건표에 RFP는 인증 제품이 들어가야하는데 인증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서류입니까 아님니까?

[스쿨넷 3단계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

⇒ CC인증 제품이 아닌 제품이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CC인증 제품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CC인증 제품으로 교체를 받았음.

[최인희 팀장]

○ 일단 제출한 제안서가 불만족인데 만족으로 작성되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서류가 아닌 허위서류임에도, 규정상 지계법 7조에 의하면 입찰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는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서 해지사유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법령이 우선인지, 변호사의 의견이 우선인지, 해지가 안되는 것이 아쉬점이 있음.

[스쿨넷 3단계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

◆ [좌장 김용필 의원] 스쿨넷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청 산하기관과 학교의 기존 인터넷망, 통신 보안장비를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아주 중대한 사업인 만큼 금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III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 스쿨넷 사업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개선방안 도출

- 1) 전국스쿨넷 사업의 계약기간이 5년(60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그 만큼 더 커지게 되므로 계약기간 단축방안 필요
- 2)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계약 또는 조달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 등 교육청이 직접 계약하는 사례 지양
- 3) 단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복수추천제 방식 고려

⇒ 도출된 과제가 사업추진 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사업추진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제도적 보완의 중요성
- 총체적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 인식
- 전국단위의 스쿨넷 선정 관련 정책변화의 필요성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미래인재과)
 - 도의회 교육위원회